

구미시 원평동 청년·소상공인 상생센터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원평동 청년·소상공인 상생센터 주차장
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설치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1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
- 나.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으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
- 다.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과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,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충전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운영사업자와 업무협약을 통해 설치하고자 함

※ 업무협약 주요사항

기관명	역할 및 업무분담 내역
구미시	부지 제공(공유재산 유상허가)
민간운영사업자	충전기 구축비용 100% 부담 및 운영

- 라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 제2항 및 「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예치 등의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, 본 안건을 상정합니다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(1) 사업명 : 구미시 원평동 청년·소상공인 상생센터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사업
- (2) 기간 : 2026. 1. ~ 2.
- (3) 설치대상지 : 원평동 112-1 일원
- (4) 주요시설 : 급속 충전기 1기, 완속 충전기 4기

나. 운영방법

- (1) 운영주체 : 민간운영사업자 등
 - ※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·운영 사업자 협약을 통하여 선정
- (2) 운영기간 :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이후 10년(10년 이내 1회 연장 가능)
- (3) 운영범위 :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,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
- (4) 운영방안 : 개방적 운영
 - ※ 근거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11항

다. 전기충전기 설치계획

- 1) 설치장소 및 수량 : 설치대상지 1개소 / 충전기 5대(급속 1, 완속 4)*

구분	계	급속	완속	비고
대상지(개소)	1	1		
충전기(대)	5	1	4	

* 설치대상지 현지실사 완료 후 수량 및 충전기종(급속 or 완속) 확정

2) 설치대상지 (26년 준공 예정)

연번	구 분	총주차 면 수	수 량		담당부서	주 소	비 고
			급 속	완 속			
총계	1개소	89	1	4			
1	청년·소상공인 상생센터	89	1	4	건축디자인과	원평동 112-1 외 2필지	신설

라. 향후 추진계획

- 1) 2026. 1. : 구미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 동의
- 2) 2026. 1. :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운영관리 협약
- 3) 2026. 2. : 사업 착수
- 4) 2026. 2. : 사업 완료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 「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

관계법령

□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
2 생략

3. 특별시장·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

4. 생략

② ~ ⑩ 생략

⑪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·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,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,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⑫ 생략

제11조의3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

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,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~ ⑤ 생략

□ 「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

제7조(충전시설의 설치·운영에 대한 지원) ① 생략

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·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, 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·수익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「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④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.

⑤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

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소 관 부 서		건축디자인과
입 안 자	과 장	장 재 덕
	팀 장	노 세 윤
	담 당 자	김 슬 기 (480-5612)